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18
----------	------

발의연월일 : 2024년 2월 2일

발의자 : 정혜영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에 대하여 추가 규정(안 제4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4. 2. 8. ~ 2. 13.
 - 의견내용 : 입법예고 중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② (생략)</p> <p><u><신설></u></p> <p>③ ~ ⑤ (생략)</p>	<p>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p> <p>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